2026년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법	무	부	소	관
대	법	원	소	관

2025.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 목　　차 】

Ⅰ. 소관부처 회부 기금운용계획안 ····· 1

Ⅱ. 심사경과 ····· 2

Ⅲ.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 3

1. 법무부 소관 ····· 3

2. 대법원 소관 ····· 4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5

Ⅴ. 대체토론 요지 ····· 30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30

Ⅶ. 심사결과 ····· 37

Ⅷ. 소수의견 요지 ····· 37

Ⅸ. 찬반토론 요지 ····· 37

Ⅹ. 부대의견 ····· 37

【 붙 임 】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결과

2026년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5. 11.

법제사법위원회

Ⅰ. 소관부처 회부 기금운용계획안

1. 법무부 소관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수입 및 지출

2. 대법원 소관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 수입 및 지출

Ⅱ.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5. 9. 3.

2. 회부일자 : 2024. 9. 4.

3.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 제429회국회(정기회)

□ 제12차 위원회(2025. 11. 6.)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회부 (법무부・대법원)

□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2025. 11. 7.)
- 심사(법무부・대법원)

□ 제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2025. 11. 12.)
- 심사・수정의결(법무부・대법원)

□ 제14차 위원회(2025. 11. 12.)
-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수정의결 (법무부・대법원)

Ⅲ.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1. 법무부 소관

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수 입

2026년도 계획안	1,451억 4,200만원
2025년도 계획	1,448억 7,700만원
증(△)감	2억 6,500만원 (0.2%)

□ 지 출

2026년도 계획안	1,451억 4,200만원
2025년도 계획	1,448억 7,700만원
증(△)감	2억 6,500만원 (0.2%)

2. 대법원 소관

가. 사법서비스진흥기금

□ 수 입

2026년도 계획안	5,722억 1,900만원
2025년도 계획	3,902억 6,600만원
증(△)감	1,819억 5,300만원 (46.6%)

□ 지 출

2026년도 계획안	5,722억 1,900만원
2025년도 계획	3,902억 6,600만원
증(△)감	1,819억 5,300만원 (46.6%)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Ⅰ 법사위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관

1 2026년도 총지출 규모 (예산 · 기금 합계)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추경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
1 법 무 부	4,472,006	4,697,312	225,306	5.0
2 법 제 처	45,733	60,336	14,603	31.9
3 감 사 원	146,934	144,090	△2,844	△1.9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5,268	29,646	4,378	17.3
5 헌 법 재 판 소	58,424	62,109	3,685	6.3
6 대 법 원	2,312,297	2,500,104	187,807	8.1
계	7,060,662	7,493,597	432,935	6.1

주) 총지출 기준: 예산·기금 총계에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

2 일반회계 예산안 〔세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추경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
1 법 무 부	4,395,122	4,607,550	212,428	4.8
2 법 제 처	45,733	60,336	14,603	31.9
3 감 사 원	146,934	144,090	△2,844	△1.9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5,268	29,646	4,378	17.3
5 헌 법 재 판 소	58,424	62,109	3,685	6.3
6 대 법 원	1,977,639	2,088,846	111,207	5.6
계	6,649,120	6,992,577	353,400	5.2

주) 총계 기준: 회계·기금 또는 계정 간 내부거래 및 보전거래를 포함한 총액

3 특별회계 예산안 (세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회계명	2025년 추경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
1 법 무 부	교도작업특별	123,680	130,284	6,604	5.3
2 대 법 원	등 기 특 별	278,574	288,517	9,943	3.6
계		402,254	418,801	16,547	4.1

주) 총계 기준: 회계·기금 또는 계정 간 내부거래 및 보전거래를 포함한 총액

4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회계명	2025년 계획(A)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
1 법 무 부	범죄피해자보호	144,877	145,142	265	0.2
2 대 법 원	사법서비스진흥	390,266	575,219	181,953	46.6
계		535,143	720,361	182,218	34.1

주) 총계 기준: 회계·기금 또는 계정 간 내부거래 및 보전거래를 포함한 총액

Ⅱ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총괄표

구 분	검토사업	세부 검토사항	페이지
1 법 무 부	50	62	p.4
2 법 제 처	8	10	p.12
3 감 사 원	5	7	p.14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4	4	p.16
5 헌 법 재 판 소	10	12	p.17
6 대 법 원	20	25	p.20
계	97	120	-

Ⅲ 기관별 검토보고 개관

1 법 무 부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일반회계>		
1. 세입 총괄	◦ 토지대여료(51-511),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변상금(57-571) 등 다수 세입항목에 대하여 합리적 근거 없이 추계방식을 변경하여 과다추계한 문제가 있으므로, 적정 수준으로 감액조정 검토 필요	p.25
2. 면허료 및 수수료 (65-651)	◦ 정부가 일부 국가에 대한 K-ETA 한시면제 조치를 2026. 12. 31.까지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2026년도 K-ETA 수수료 등 수입이 법무부가 당초 계상한 금액에 비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정 수준으로 감액조정 필요	p.29
3.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대체경비, 65-651)	◦ 최근 6년 및 2025년 8월 기준 외국인등록증 등의 발급 실적을 고려할 때, 2026년도 세입예산 편성기준인 74.7만매는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재점검이 필요	p.32
4. 세출 총괄	◦ 법무부의 성과목표관리는 실질적·체계적 실시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전략목표·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목표치 설정의 합리성 등을 비롯하여 성과목표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성과목표관리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p.35
	◦ 업무용 친환경 전기차 증가 추세, 공무원 여비규정 및 실 운행된 차량의 유종별 연비(전비)를 고려할 때, 내연기관 운행에 기반한 유류비 편성액을 감액할 필요	p.44
5.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0)	◦ 최근 5년간 기본경비 내 5개의 포상금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신고(제안)내역이 없어서 전액 미집행하거나 채택 건수 부족으로 집행률 50% 이하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포상금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를 활성화할 필요	p.49
6.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 워크숍을 매년 외부 위탁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직접개최를 전제한 일반수용비 및 임차료 예	p.54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피드백 (7032-301)	산안의 편성은 실제 집행방식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실제 집행방식에 맞도록 일반용역비로 편성 필요	
7.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7037-300)	◦ 최근 4년간 법무정책 홍보 브로슈어 제작비 집행률이 2022년을 제외하고는 70%대 이거나 미집행한 경우가 있고, 주제 중복도 존재하므로 홍보브로슈어 제작 내실화를 통한 홍보 활성화에 노력할 필요	p.58
8. 법무부 기록관 운영(7039-302)	◦ 2023년 동 예산이 기본경비 내 별도 사업비로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타 예산을 법무부 기록관 운영을 위해 집행하는 문제가 발견되고 있어 관련 예산을 하나로 통합・관리할 필요	p.62
9. 공익법무관 운용 총괄	◦ 공익법무관 수가 지속하여 감소되는 상황이므로, 법무부는 인원감소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업무량, 해당 지역의 변호사 수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익법무관을 대체할 수 있는 경력변호사 채용 등 법률구조·송무인력 확충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	p.65
	◦ 공익법무관 현원은 195명이고, 매년 충원인원 부족에 따라 현원이 감소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201명을 기준으로 산정한 인건비와 134명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근매식비에 대한 일부 예산 조정 필요	p.70
10. 국가배상금 지급 (1031-301)	◦ 2025년 과거사 사건의 항소포기에 대한 예산을 예산 편성당시 반영하지 못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최근 항소 포기로 확정된 배상금 등 예산(1,811억원) 증액 필요	p.71
11. 기업환경지수 개선 (1032-307)	◦ 기업환경지수 개선(1032-307) 사업과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선진화(1033-304) 사업의 '국제중재홍보, 국제중재인 양성 등' 동일 목적의 세부사업들을 2개의 사업에 나누어 편성하고 있는바, 법무부는 각 세부사업에 편성된 예산 중 국제중재 홍보, 국제중재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의 연계 추진을 검토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점검하는 등 사업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p.76
12.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 (1038-305)	◦ 해외출장 예산편성 시 출장 계획과 실제 출장대상국 및 목적이 일치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사전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있지 않는바, 법무	p.82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부는 해외출장 예산편성 시 사전계획 수립 및 구체화 필요	
13. 법무실 기본경비 (7011-201, 7011-253)	◦ 2023년 국제법무국의 신설로 법무실 내 일부 과의 인원 등이 이동하였으나, '법무실 기본경비(총액, 7011-201)'와 '법무실 기본경비(총액, 7011-201)'는 매년 증가추세이고, 유관부서 간담회 등 업무협의 명목으로 편성된 업무추진비용이 있음에도, '법조인접직역 업무협의'를 신규 편성하여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는 것이 필요한지 검토하여 적정예산을 반영할 필요	p.87
14. 법률구조 (1131-300)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홍보 및 법계몽활동비'의 경우 집행률 부진, 법문화특별회계의 사업들과의 중복성, 홍보 사업의 부실한 내용으로 인한 제한적 홍보효과 등에도 불구하고 2022년부터 국고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바, 2026년도 예산이 편성 시점부터는 전액 자부담으로 지출 필요	p.92
15. 인권교육 (1133-300)	◦ 그동안 우리 위원회 결산에서 인권감수성 훈련의 숙박비(임차료)의 과중한 지출을 시정하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 공기관보다 임차료가 몇 배 더 비싼 민간 교육시설을 주로 사용하였는바, 법무연수원 등 공공기관에서의 교육 횟수를 늘리고 임차료 예산 일부 감액 필요	p.98
16. 아동인권 증진 (1133-302)	◦ 아동인권 증진 교육의 경우 2024년도 총10회에 걸친 1박2일 합숙교육을 전 회차 4성급 호텔에서 진행하며 과도한 중·석식 비용 및 숙박료 등을 일반수용비(210-01)로 지출하였고 2026년도 예산안에도 같은 비목으로 편성하였는바, 해당 비용을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지침에 부합하도록 임차료(210-07) 비목으로 변경하여 편성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일부 감액 필요	p.103
17. 이민정책개발 지원 (1231-300)	◦ 이민정책 개발연구 내역사업비는 핵심사업이 결여된 채 공무직근로자 운영비 및 행사용역비가 예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동 사업의 추진 필요성 재점검 필요	p.109
	◦ 당초 추진 취지와는 관련성이 적은 국가를 임의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출입국관리공무원 상호 교환 프로그램 제도의 운영 점검 필요	p.112
18. 이민정책연구원 운영 (1231-302)	◦ 2025년 3월 연구원이 신규로 마련한 공간의 연간 임차료가 편성예산 대비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부족분 해결을 위한 노력 필요	p.116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19.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 (정보화, 1232-305)	◦ 출입국정보화전산센터 신설 시 출입국·이민행정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해 화재 대비 시설구축에 만전을 기할 필요	p.120
20. 외국인보호관리 (1233-300)	◦ 최근 5년간 보호외국인 의약품 구입 사업비 집행률은 141%~380%로 매년 초과 집행되어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의약품 구입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p.124
21. 외국인사회통합지원 (1233-301)	◦ 2023년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자이민 및 공익사업 투자이민 유치 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실적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	p.127
22.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운영 (1233-304)	◦ 사실상 법무부의 재집행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이민재단이 수행하는 법무부 대행사업의 적정성 점검 및 투명성 제고 노력이 필요	p.132
23. 외국인본부 기본경비 (7011-255)	◦ 최근 3년간 수요포럼 강사료 집행률이 10.7%~25.8%에 그치고 있어 직원의 직무역량 강화 및 전문성 함양 기여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될 필요	p.137
	◦ 최근 3년간 온라인미디어 다국어 번역·감수 예산 집행률이 3.0%~43.3%에 그치고 있어, 다국어 번역·감수 예산 활용도를 제고할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	p.138
24. 검찰국 총괄	◦ 2026년 10월부터 현행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 및 행안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신설될 예정인바, 향후 공소청의 조직 및 기능 등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맞추어 예산편성 방향성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고 공소청의 안정적 출범 및 형사사법 행정 연속성 확보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할 필요	p.141
	◦ 검찰국 소관 각종 세부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에 특수활동비가 총 72억 900만원, 특정업무경비가 총 486억 4,800만원 편성되었는바,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따른 시정요구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기밀유지 필요성 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업무추진비 등 일반경비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필요	p.143
25. 과학수사 인프라	◦ 검찰의 영상녹화조사 활용 실적이 크게 부진한 상	p.148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구축 (1333-302)	황인바, 실제 영상녹화조사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전체 영상녹화조사장비·시설 보유 수량의 일부 축소 등 비용 절감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예산안도 일부 감액 검토 필요	
26.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1333-306),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1337-301)	◦ 과다 이·전용 및 실적부진 등을 사유로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미흡'을 받았음에도, 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공요금의 대폭 삭감으로 지출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향후 공공요금 등 단순 경상경비 감액이 아니라, 사업 추진체계 및 집행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질적 구조조정 중심 대응 필요	p.155
	◦ 수사기록전자화 사업의 경우 전자화 대상 기록의 총량 등을 근거로 정량 산출한 인력 수에 더하여 별도 정량 근거 없이 20명 이상을 추가 증원하는 방식으로 산출내역을 제시하였는바, 법무부가 이에 대한 근거를 설득력 있게 보완·제시할 필요	p.159
27. 형사부 등 수사지원 (1335-301) 등	◦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용 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가능한 '모바일 통보'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다편성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용은 실소요에 맞추어 일부 감액조정 검토 필요	p.163
	◦ 영장심의위원회 및 수사기관협의회 등 운영 관련 예산은 지속적 예산편성에도 불구하고 집행실적이 매년 저조한 상황인바, 향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집행규모가 단기간에 대폭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예산안 감액조정 필요	p.167
28. 공공수사 (1335-302)	◦ 국가보안유공자포상금 및 선거범죄신고포상금은 전년도 집행실적과 향후 소요 규모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충분히 수행하지 아니한 채 편성 규모를 과다 산정하여 잔여 예산을 다른 사업 재원으로 이·전용하여 집행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최근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감액조정 검토 필요	p.172
29.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1335-303)	◦ 특정범죄신고자구조금은 매년 집행액 및 지급건수 등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예년과 유사한 규모로 편성하는 것은 과다한 측면이 있는바, 최근 집행실적 및 실제 소요를	p.177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감안하여 일부 감액조정 검토 필요	
30. 마약수사 (1335-304)	◦ 기존에도 '가상화폐 추적수사지원'을 위한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는바, 그 집행실적도 크게 저조한 상황에서 유사 목적으로 '가상자산 추적도구' 도입 예산을 다시 대규모로 신규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신중검토 필요	p.181
31.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1335-305)	◦ '디지털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대상 범죄 관련 전문화 교육', '스토킹범죄 등 대응역량 강화' 및 '피해자 재활을 위한 심리, 예술치료' 등 내역사업의 실적이 매년 부진하므로, 예산안 감액조정 검토 필요	p.184
32. 형사보상 (1337-302)	◦ 매년 형사보상금 지급분 부족으로 과다 이·전용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법무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20억원(4.8%)만 증액하여 440억원 규모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그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	p.188
33. 검찰청 운영 기본경비 (총액, 7018-202)	◦ 매년 실무수습 변호사 채용 계획 및 관련 예산을 과다 설정하고 있고, 그로 인해 관련 예산의 이·전용 및 불용 등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바, 검찰청 실무수습 변호사 채용예산 일부 감액조정 필요	p.192
34. 국제법무국 총괄	◦ 법무부는 국내 법무활동(1000)과 국제법무활동(1400)을 2026년 예산부터 통합 편성했으나, 이는 국제법무활동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국회의 예산 적정성 파악 취지에 반하므로, 2027년 예산안 편성 시 분리 편성할 필요	p.196
35. 정부부처 등 국제법무 법률 지원(1032-300)	◦ 국제법무국이 수행하는 해외진출기업 대상 법률자문이 '정부부처 등 국제법무 법률지원(1032-300, 1:1 대면자문)'과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1032-301,온라인)'으로 이원화되어 비효율성과 예산 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정부부처 등 국제법무 법률지원(1032-300)' 세부사업으로 통합 편성할 필요	p.199
36.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1032-301)	◦ 법무부가 '국제거래법 연구단', '국제법무자문위원회', '국제거래법학회 활동경비', '국제법 전문위원 보수' 등 4개 내역사업에 걸쳐 유사·중복되는 국제법 연구 및 자문 관련 예산을 분산 편성하는바, 비효율성, 예산집행의 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기능이	p.205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중복되는 두 위원회 운영사업을 통합하고 자문 관련 예산을 일원화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	
37.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 (ODA, 1032-302)	◦ 법무부의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특정국 편중 법제정비 지원 사업(ODA)은 성과지표가 행정 산출물 건수 기반이라 실질적인 법률 인프라 개선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향후 지원 대상과 분야를 다각화하고 '국제소송 및 국제투자분쟁 대응' 지표 외에 사업효과 및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측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	p.209
38. 교도소 행정지원 (1531-300)	◦ 「민영교도소 운영경비 회계 등에 관한 지침」에 운영경비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민영교도소법 시행규칙 및 위탁계약서 개정을 추진하는 등 운영경비 지원예산의 지급기준을 명확화할 필요	p.212
39. 대체복무 시설개선 및 운영(1531-304)	◦ 대체복무 예비군 귀가여비 및 훈련보상비는 예비군법 등에 따라 지급하는 준 의무지출성 경비이므로, 2026년 대체복무 예비군 훈련 예상인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예산의 검토 필요	p.218
40.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1532-300)	◦ 교정시설 수용인원의 급격한 증가로 1일 평균 수용인원이 63,000명대('25.10.)에 달하고 있으므로, 조건부 가석방 활성화,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체계 전문성 강화 등 적극적 가석방제도 운영을 통해 수용시설 과밀화를 해소할 필요	p.223
41. 교정교화 (1532-301)	◦ 이수명령의 부과대상이 「마약류관리법」 및 판례상 명확한 점을 고려할 때, 국회 의결을 전제로 편성된 예산은 법률상 근거가 부족하므로, 향후 법률안의 심의과정 및 내용을 참조하여 반영 여부를 검토할 필요	p.231
42. 범죄예방기관 시설운영(1631-304)	◦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을 과도하게 감액편성할 것이 아니라, 노후 시설·장비 유지·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 기관의 필수 소요를 점검·산정하여 본 비목 내에 반영하는 등 예산 배분의 균형을 제고할 필요	p.236
43. 소년원생수용 (1632-300)	◦ 소년원 송치인원의 꾸준한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구호 및 교정비(320-06)는 소년원 등에 수용되는 소년의 기본적 생활 유지를 위한 지출이므로 2026년도 해당 예산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예산을 편성할 필요	p.240
	◦ 소년보호기관별 급식관리위원회와 시험위원 및 채용	p.243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점검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석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외부위원 수당의 예산집행률을 제고할 필요	
	◦ 출원생 외래진료비의 경우 2022년~2024년 동안 0.4%, 3.7%, 16.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의료재활소년원 위탁소년의 재범방지 및 원활한 사회복귀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속적 사후관리 등 해당 제도의 활성화 필요	p.249
44. 갱생보호활동 (1633-300)	◦ 전남기술교육원 건립사업이 2026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세부일정을 재점검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p.253
45. 보호관찰활동 (1635-300)	◦ 심리치료비 지원 대상이 되는 위기상황자 수의 합리적 추계를 바탕으로 적정규모의 예산을 사전에 편성하고, 심리치료비 지원대상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따라 집행할 필요	p.257
46. 법무·검찰 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 (5131-301)	◦ 논문 표절검사 프로그램 구입 예산 적극 편성, 표절이 확인된 논문의 통보 및 조치결과 회신, 관련 규정 적극 반영 등 표절 논문 전반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	p.263
<교도작업특별회계>		
47. 교도작업 (1535-300)	◦ 교도작업 담당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을 통한 채용 활성화 및 상용임금 등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하고, 공무직 근로자의 장기적 정원 확대방안을 마련할 필요	p.266
48. 시설보완 (1535-302)	◦ 여성수용자 수용률의 꾸준한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향후 경북북부제3교도소 여성수형자의 장기적인 정역 집행률 제고를 위한 교도작업장 확대방안을 모색할 필요	p.271
<범죄피해자보호기금>		
49.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1135-301)	◦ 2022회계연도 법무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본 사업은 '미흡'을 받았으나 2024년까지도 형사조정 성립율 등 형사조정 실적이 개선되지 못하였는바, 일반형사 사건 적극 발굴, 대국민 홍보 및 형사조정위원에 대한 실습형 교육 등에 관련된 예산 신규 편성 및 면밀한 집행을 통하여 실적 개선 필요	p.277
	◦ 형사조정 공증수수료 지원 예산의 2022년도 이후 최근 3년간의 집행실적의 저조로 2026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으나, 이는 법무부가 추진 중인	p.279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공증제도운영 및 활성화(1038-300)’의 취지와 상반된다는 점과 본 제도가 형사조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절차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예산 감액은 신중히 심사하고 공증수수료 집행실적 개선방안 적극 마련 필요	
50.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1135 - 300)	◦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솔루션 서울 센터는 24년도 개소 이후 현재까지도 피해자특성별 지원현황, 이용자만족도 조사 등 센터운영의 성과와 관계된 통계를 집계·분석하지 않으면서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완료(2027년 하반기 예상) 후 이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나, 서울 센터의 성과 관련 통계는 센터의 다른 지역 추가 개소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위한 필수 자료인바 법무부는 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 완료 전의 성과 관련 통계 집계·분석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소요를 예산안에 반영 필요	p.283
	◦ 원스톱솔루션센터의 전국 지역 거점에 대한 확대 설치(추가 개소) 관련 예산이 2026년도 예산안에 미반영되었는데, 서울센터의 장기간 단독 운영 시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는 점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법무부는 서울센터의 객관적 운영성과를 즉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및 구체적이고 명확한 추가 개소 계획의 신속한 마련 등 추가 개소 관련 예산의 적기 편성 및 집행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필요	p.286
	◦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일부인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 구축 관련 핵심 프로그램인 EBS/EAI Adaptor 구입액 소요 5억 3,000만원이 미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유관기관 간 서비스 연계 구축을 위한 필수 요소로서 미반영 시 사업의 연내 추진 불가 및 동 사업의 일반연구비(260-01) 세부내역 중 ‘연계컨설팅 및 개발’ 예산 3억2,536만7,096원의 집행 불가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해당 예산을 2026년도 계획안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 모색 필요	p.288

2 법 제 처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일반회계>		
1. 인건비(총액인건비 대상) (1001-100)	◦ 법제처는 인건비 중 “중요직무급 수당” 지급을 위하여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근거규정에 따라 중요직무 선정사유 및 절차 등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면 자료를 관리하여 중요직무급 선정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중요직무 선정 사유인 “중점 추진과제”를 중요직무급 요건에 부합하도록 적절히 선정할 필요	p.13
2. 기관운영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1011-200)	◦ 법제처는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중 4억 2,668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법제처 파견검사가 폐지되었으므로 2026년 예산안에 편성된 파견검사분 직책수행경비 954만원은 감액할 필요	p.21
3. 기관운영기본경비 (1011-250)	◦ 법제처는 기관운영기본경비 중 분기별 발간 학술지인 『법제』 발간을 위하여 8,22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2022년 이후 연평균 약 2,459만원(30%)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고, 원고료는 연간 원고 107편이 게재되는 것을 전제로, 원고 심사료는 연간 27편이 투고되는 것을 전제로 편성하여 일관되지 않으므로 적정 수준으로 감액 조정 필요	p.24
4. 법령정보제공 (1031-300)	◦ 법제처는 어린이·청소년법제관 사업의 일반용역비(210-14목) 예산을 2025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는데, 입법체험활동 만족도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법령퀴즈 골든벨의 경우 2025년 만족도 수치가 86%에 해당하는 등 상대적으로 저조한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는바, 만족도가 낮게 나오는 입법체험활동의 경우에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관련 예산의 효과적인 운용 필요	p.28
5. 법제정비 (1032-301)	◦ 법제처는 법제정비 사업 내 알기쉬운 법제구축 내역사업에서 읽기 쉬운 법령문장 만들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4억 1,9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연구용역 결과가 최종 문장 정비안으로 선정되는 비중이 상당히 낮고 실제 법령 정비 실적도 미흡하며, 정비안 자체의 내용도 경미한 수정에 불과하여 개정 필요성이 낮은 경우가 있으므로 예산의 효용성 등을 고려하여 문장정비 사업의 실효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	p.33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6. 법제업무정보화추진 (정보화, 1033-500)	◦ 법제처는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33억 4,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국가기관의 검색서비스에 대해서는 일반국민들이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AI 환각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지능형 법령검색(Lawbot) 사용자의 질의 입력 히스토리를 분석하여 생성형 AI 법령검색을 위한 학습데이터셋 구축에 활용하는 한편, 생성형 AI 법령정보 서비스의 개발 시 법령 조문, 판례번호 등 인용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고 사용자가 곧바로 해당 원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	p.40
	◦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레이어 고도화 예산 2억 5,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많은 버튼과 복잡한 메뉴 구성의 직관화, 반응형 웹 기술의 적용, 뒤로가기 지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구성 재설계 등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예산의 증액 검토 필요	p.45
	◦ 법제처는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예산 1억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법제처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을 할 필요성이 높은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법제처가 관리하는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경우 향후 정부입법 통합플랫폼으로 통합하여 제공되므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과정에서 정부입법 통합플랫폼 구축 이후의 개인정보 관리방안도 점검하는 등 개인정보 컨설팅 예산의 효과적인 운용 필요	p.49
7.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 인력육성(1034-300)	◦ 법제처는 매년 약 4,300만원의 예산을 법제업무담당자 단기해외연수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최근의 단기해외연수를 살펴보면 출장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정이 포함되거나 기존 실시계획과 다른 일정으로 출장이 이루어진 사례 등이 있으므로 단기해외연수의 실효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단기해외연수 진행 필요	p.54
8. 외국법제기관교류 (1034-301)	◦ 법제처는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의 설립·운영 관련 경비 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협의체가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중국과 일본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참여국을 확대하여 협의체가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	p.59

3 감 사 원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일반회계>		
1. 성과계획서	◦성과지표로 "감사활동의 경제적 성과"와 "공직비리 적발 실적" 두 가지만을 설정하고 있는데, 감사원은 헌법 및 감사원법에 따라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이외에도 국가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각 소관 업무를 전체적으로 고르게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 필요	p.8
2. 기본경비 (1111-251)	◦최근 3년간 집행실적과 연례적 조정을 고려하여 전년도 예산현액 40억 6,900만원에 대하여 3.8%의 인상률을 적용하여 2026년도 상용임금 예산액 42억 8,700만원에서 6,400만원 감액한 42억 2,300만원으로 편성할 필요	p.11
	◦에너지 절감을 위해 2025년도에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를 위한 예산을 7억 3,358만원 편성하였고, 2025년도 10월 현재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를 완료하였음. 현재 에너지 절감 효과는 1%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에너지 절감 효과를 높일 필요	p.15
	◦2026년도 예산안 중 청관사 임차료를 전년 대비 7.4%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지방사무실 임차료의 계약가 상승분을 예측하여 산출한 것으로 설명함. 감사원은 민간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지방사무소의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공공청사를 적극 활용하는 등 향후 임차료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할 필요	p.19
3. 적극행정 지원 (1131-304)	◦감사원은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 1명을 감사권익보호관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1명의 보호관이 연간 150건 내외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소명·면책건을 처리하고 있음. 자문 건수와 주요 감사분야를 고려하여 인력풀을 구축·운영하고, 최소한의 비식별 지표로서 면담 건수나 자료요청 건수 등을 관리하는 등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	p.22
4.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1133-309)	◦감사원은 기존 노후시설이었던 직원숙소를 개보수하여 어린이집을 설치하면서 관련 예산을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세부사업에 편성해 왔음. 어린이집 준공 후에는 사업성격이 보육서비스로 변경되었고 민간 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바, 사업	p.25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성격에 맞는 세부사업으로 이관하고 관리용역비(210-15목)에서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로 비목을 변경할 필요	
5. 국제교류협력강화 (1135-322)	◦ 감사원은 2026년에 3개 국제기구의 외부감사를 수행할 예정이며 이 중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경우 2025년 11월경 외부감사인으로 위탁받을 예정이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에는 수임 여부가 불확실하여 관련 세입·세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소관 예산안의 조정이 필요	p.29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일반회계>		
1. 성과지표 개선방안 검토 필요(총괄)	◦ 공수처의 대표 성과지표가 정보화 예산 비중을 근거로 직원 대상 '디지털 수사 및 정보화 체계 이용 만족도'로 설정된 것은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척결'이라는 기관의 설립목적 및 국민 체감 성과와 거리가 멀고 객관성이 결여되므로, 「국가재정법」 취지에 맞게 사건처리율 등 기관의 임무 및 궁극적 목표 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결과 지향적 성과지표를 복수로 재설정할 필요	p.17
2. 공수처 인력운용 문제 개선 필요(총괄)	◦ 2025년 10월 기준, 공수처는 정원(85명) 대비 약 25%에 달하는 파견인력(22명)이 인사·회계 등 기관유지의 핵심기능을 담당하여 업무 연속성 및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므로, 파견을 지양하고 조직 안정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법률개정을 통한 행정직원 정원확대를 추진하고, 정원 내 인력이 핵심업무를 담당하도록 인력 배치 및 시스템 효율화를 개선할 필요	p.22
3.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032-301)	◦ 고위공직자범죄는 내부고발자로부터 수사의 단서를 얻어야 할 필요성이 큼에도 내부고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바, 홍보·교육 등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내부고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적극 강구 필요	p.28
4. 공판활동지원 (1033-301)	◦ 공수처는 공판중심주의 대응을 위해 '공판역량강화' 사업을 신설하고 검사 스피치 교육을 운용하고 있으나, 해당 교육이 공판 특화가 아닌 프레젠테이션 교육으로 목적 적합성이 낮고 인당 140만 원의 고비용이 소요되며, 기존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 내 미집행된 민간위탁교육 예산을 우선 활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할 필요	p.33

5 헌 법 재 판 소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일반회계>		
1. 인건비 (1001-150)	◦ 헌법재판소의 인건비 예산안(353억 5,300만원)은 전년도 예산 대비 1.9% 증액되었는데, 2026년 공무원보수 처우개선율이 3.97%인 점을 고려할 때 불용률은 예년에 비해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연례적으로 과도한 불용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2026년도 예산 집행 시 동일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적정 집행률을 확보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p.17
2. 본부기본경비 (1011-250)	◦ 상용임금 예산은 근로자의 퇴직 또는 휴직으로 인한 결원 기간에 따른 보수 및 수당 등의 미지급으로 인해 연례적으로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바, 민간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휴직·퇴직 시 신속한 채용 절차를 운용하는 등 집행률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	p.22
	◦ 헌법재판소는 본부기본경비 사업의 공공요금및제세 세목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2,549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2024년에는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여 2025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2025년 10월 기준으로도 의무고용률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유지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	p.27
3.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1011-251)	◦ 헌법재판연구원의 유류비 예산은 2025년 9월 현재 집행률이 26.6% 정도밖에 되지 않는 등 매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부진한데, 최근 5년 주유소 휘발유값이 가장 높았던 연도의 집행액을 고려하더라도 2026년에 편성된 예산안은 과다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최근 수년간의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적정소요액에 대해 고려할 필요	p.31
4. 국선대리인보수등 (1031-300)	◦ '국선대리인보수 사업'은 국선대리인 신청 사건의 증가 추이, 사선대리인 대비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의 인용률 차이 등을 고려할 때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바, 국선대리인 신청에 따른 선임률 및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의 인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선대리인의 보수 현실화, 소송 수행상 편의 제공 등 다양한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동 사업을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p.36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 ‘참고인 연구비 등’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1,200만원)은 2025년도 예산(1,800만원)에 비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헌법재판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전년도에 준하는 수준으로의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헌법재판소는 향후 참고인 연구비 등 사업의 활용도를 제고할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p.42
5. 재판활동운영지원 (1031-301)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총서 발간을 위해 3,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 역사관 내 구술기록관을 마련하고 있는 점, 헌법재판소 내부에 총서를 비치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종이의 생산·소비를 지양하고자 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술총서 발간물 부수를 조정하여 예산의 절감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	p.48
6.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1033-303)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주석서 개정판 발간’ 사업을 외부 연구용역계약을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연구원 내의 헌법연구관을 포함한 연구인력이 외부 연구자에 비해 헌법재판 분야에 대한 보다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방식이 내부 인력을 활용하여 주석서를 발간하는 방식보다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연구용역 방식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외부 연구자와 헌법연구관 등 내부 인력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	p.56
7. 해외연수 (1034-304)	◦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 사업과 ‘헙법연구관 전문화연수 사업’의 예산 규모가 비슷한 수준임을 고려할 때,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 사업의 예산을 헌법연구관 전문화연수 사업으로 편성하여, 헌법연구관 전문화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헌법연구관의 수를 현행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하는 것이 해외연수 사업의 목적 달성에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이는바, 헌법재판소는 헌법연구관 전문화연수의 확대 필요성 및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의 유지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	p.62
8. 재판자료확충 (1035-306)	◦ ‘헌법재판소공보 발간’ 사업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내외부 의견을 반영	p.71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하여 2026년도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 대비 1,500만원(46.9%) 증액된 4,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헌법재판소의 발간물들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하여 PDF파일 형태로 다운로드하여 열람·활용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독성 향상을 위한 페이지 수 조정과 함께 헌법재판소공보의 적정 발간부수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고수량 등의 조정을 통해 일부 예산 조정을 검토할 필요	
9. 헌법재판정보화 (정보화, 1035-500)	◦ '데이터센터 발전방향 ISP 수립' 사업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관련 ISP 사업을 수행한 타 기관 사례를 살펴보면 평균 사업예산은 4억 5,600만원, 평균 사업 수행기간은 5개월 가량으로 헌법재판소가 사업 수행을 위해 편성한 예산액(5억 3,300만원) 및 사업 수행 예상 기간(6개월)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업 범위 및 예산 규모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ISP를 통해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및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고,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한 집행 관리도 철저히 이행할 필요	p.78
10. 전자도서관운영 (정보화, 1035-501)	◦ 헌법재판소는 '차세대 법률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을 2026년 신규 사업으로 편성(2026년도 예산안 22억 3,000만원)하였는데, 해당 사업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개년에 걸쳐 7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5개 시스템을 구축 또는 고도화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전 단계에 있어 사업의 목적에 유념하여,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시스템, 헌법재판소의 특수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업 목적에 맞는 완성도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보강 등 체계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면밀한 집행 관리를 할 필요	p.85

6 대 법 원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총괄>		
1. 성과관리 대상사업 재구조화 및 프로그램 세분화	◦ 대법원 소관 세부사업 중 '재정 사업'으로 분류되어야 할 세부사업이 '기본경비성 사업'으로 분류되어 성과관리 비대상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성과관리를 받지 않는 등 현행 성과관리 예산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성과관리 대상/비대상 사업 재구조화 필요	p.17
	◦ 대법원 소관 성과관리 대상 프로그램이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관별(실국단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이질적인 세부사업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됨에 따라 성과지표와 세부사업 간 연계성이 떨어지며, 각 프로그램의 성과가 우수한지 또는 미흡한지 여부가 환류되고 있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대법원 소관 프로그램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세분화하여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필요	p.25
2. 점역서비스 제공방식 개선	◦ 대법원이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등 점역서비스 예산 집행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방문신청 방식이 아닌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방안 검토 필요	p.33
<일반회계>		
3. 토지대여료 (51-511)	◦ 최근 몇 년간의 실제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2026년도 토지대여료 예산안 일부 감액을 통해 토지대여료 세입 예산액 정확성 제고 필요	p.39
4. 본부기본경비 (7011-250)	◦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납부하기 위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한 예산 절감 노력 필요	p.42
5. 사법업무전산화 (1331-300)	◦ 법원이 내부 업무지원용 시스템으로 개발 중인 재판지원을 위한 AI플랫폼을 국민에게 공개하면 국민들의 소송 준비 및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관련 법률안이 발의된 점 등을 감안하여, 해당 플랫폼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과 별도의	p.48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재판관련 대국민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안 간 효율성과 경제성 등을 비교검토하여 일반 국민들이 재판관련 AI서비스를 조속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사법부 AI 기반 형사재판 및 양형지원을 위한 지능형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의 사고이월 방지를 위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p.53
	◦ 법원의 인사이동 및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네트워크 등 시설공사비가 실제 수요 대비 과다 편성됨에 따라 연례적으로 불용되고 있는데, 2026년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불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p.57
6. 가족등록업무전산화 (1332-303)	◦ 가족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비를 금융리스 방식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2026년도 실제 집행 예정액보다 과다 편성된 임차료 예산 2억 6,000만원 감액 필요	p.60
7.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 (1333-304)	◦ 법원의 법률정보 제공 플랫폼인 종합법률정보의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고, 법원전자도서관, 온라인 법고을 등 법원의 법률정보 제공 사이트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법원의 법률정보 제공 플랫폼의 통합 방안 검토 필요	p.65
8.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1142-401)	◦ 법정언행컨설팅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단년도 방식으로 컨설팅을 수행하고 종료되는 방식'에서 '임용 후 5년, 10년 단위로 개별 법관의 법정언행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환류하여 법정언행이 실제 개선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실질적 법정언행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재설계 필요	p.70
9. 재판절차비용지원 (1143-403)	◦ 동 사업에 편성된 진술조력인 수당은 법령에 따라 비상근 진술조력인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는데, 상근 진술조력인의 참여 횟수까지 함께 산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실제 수요에 비해 과다하므로 최근 5년간 실집행 실적을 감안하여 1,000만원을 감액할 필요	p.76
10. 전문재판운영 (1144-407)	◦ 동 사업에 편성된 회생법원 이전 및 설치, (구)서울회생법원 공간재배치, 통합도산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p.82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예산은 사업 성격상 '법원시설관리 등'(1253-411) 사업에 편성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사업을 시설구조 재배치 등을 위한 '법원시설관리 등' 사업으로 이관 필요	
	◦ 법원이 민간시설과 같은 건물 및 층을 공유하는 사례는 서울회생법원이 첫 사례인데, 현재까지 진행된 청사이전 배치 기본계획, 리모델링 설계 발주 준비 및 과업지시서·지침 작성 과정에서 명시적인 보안 및 방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차질 없이 캠코양재타워에 서울회생법원이 이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	p.87
	◦ 2026년에는 (구)서울회생법원 공간재배치 내역사업을 통해 '제3, 4별관'만 공간 재배치할 예정임에도 '본관'의 공간 재배치를 위한 자산취득비가 편성되어 있으므로 관련 예산 감액 필요	p.90
11. 법원시설관리 등 (1253-411)	◦ 법원 유리문 및 창문 강화필름 부착사업 대상에 재판과 관계없는 사법연수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판과 무관한 소속기관 청사 건물을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p.92
<등기특별회계>		
12. 토지대여료 (51-511), 기타고정자산매각대 (71-713)	◦ 토지대여료는 최근 실적보다 4배 과다편성 되었고, 기타고정자산매각대는 수납실적이 없음에도 동일 금액을 반복 편성하고 있으므로, 최근 실적 및 징수계획에 근거한 합리적 추계에 따라 세입예산 편성 필요	p.97
13. 등기소 신·증축 (1252-411)	◦ 노후등기소 리모델링에 따른 임차료가 연례적으로 실제 수요에 비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으므로, 임차료 예산액을 이에 맞게 조정할 필요	p.101
14. 등기업무 전산화 (1334-305)	◦ 장애인편의기능 구비 무인발급기 설치와 관련하여, 계약 지연 및 제작·납품 일정을 고려해 실제 설치 시점을 정확히 산정하고, 임차가 불가능한 기간에 해당하는 예산은 감액조정 필요	p.104
15. 등기업무 운영지원 (7033-300)	◦ 업무자료 발간 예산의 집행 부진과 관련하여,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연례적·관행적 편성이 아닌 구체	p.108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적인 발간계획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추계하고, 특히 2026년도에는 법원행정처의 발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만큼 2026년도 예산액 감액조정 필요	
16. 예비비(7033-300)	◦ 등기특별회계가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매년 예비비 전액이 불용 처리되어 왔으므로 예비비 편성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	p.111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7.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1161-303)	◦ 각 법률구조단체별 특수성과 법률구조 성과를 고려할 때, 법률보호취약계층 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5년 수준으로 계획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p.115
18. 소년보호 등 지원 (1161-304)	◦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 사업 추진이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 상황과 총사업비 조정 협의 절차 등에 따른 추가적인 사업 지연 가능성을 감안하여 실시설계비 등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계획안 규모를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	p.121
19. 민원서비스 개선 (1161-305)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순번발행기 도입의 필요성과 중요성 및 사업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향후 동 사업과 같이 법정 시한이 정해진 사업을 추진할 경우 법정 시한을 도과하는 등의 법률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p.127
20. 사법서비스 향상 (1161-306)	◦ 3개 회생법원의 개원 시기를 감안하여 과다계상된 개인도산 상담센터 운영비 등을 적정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	p.132

Ⅴ. 대체토론 요지

※ 회의록 참조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장경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장경태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등 6개 기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11월 7일과 12일, 총 2차례 회의를 열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예산결산소위는 예산 감사에 준하는 강도 높은 심사를 진행하며, 법무부와 대법원 등 각종 증빙자료를 상세하게 검토하였고, 부대의견에 구체적인 보완책을 명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법무부는 법무부 개혁, 검찰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편성안을 세심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면제 연장조치를 반영하여 200억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안**은 7,100만원을 감액하고, 2,380억 8,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380억 1,100만원을 순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찰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는 특활비 20억원을 감액하여 특경비로 전환하고, 특경비 50억원을 감액하여 업추비로 전환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특활비는 적체된 민생과 서민생활 침해 사범 수사 분야에 집중 집행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여 집단행동 등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중인 검찰청의 경우에는 특

수활동비를 집행하지 아니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활동비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검찰은 구체적 집행 항목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검토한 후 집행한다' 등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한편, 국가배상금은 여순사건을 비롯 최근 항소포기로 확정된 과거사 사건 판결 배상금 지급을 위해 1,810억 5,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용자 자녀 지원 확대 등을 위해 3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도작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성폭력피해자 생계비 지원 현실화 및 해바라기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총 55억 6,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전자감독 전담인력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 등과 관련 총 **2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과 관련해서는 안양소년원의 노후화·과밀화 해소를 위한 재건축 설계비 7억 4,000만원 반영 필요성 등, 총 4건을 기재위에 의견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제처 소관 예산안**은

법무부 파견검사 감축에 따라 해당분 직책수행경비 954만원을 감액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레이어 고도화를 위해 8억 2,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8억 1,146만원을 순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법체험활동별 만족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 기반 예산편성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총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원 소관 예산안**은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외부감사 실시에 따른 예상 수입 4,800만원과 지출 4,900만원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각각 반영하고, 어린이집 운영예산안 2

억 4,100만원을 기본경비 세부사업으로 이관하여 민간위탁사업비로 비목을 변경하는 등, 세출예산안 기준 총 4억 5,100만원을 순증하였습니다.

아울러,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 국회 제출 등, 총 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예산안**은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실질적 운용을 위해, 법무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 보호프로그램 등과 연계하고, 협력관계 구축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등, 총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은

헌법재판에 있어 참고인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므로, 전년 수준 예산확보를 위해 참고인 연구비 등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선대리인 선임률 및 인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총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

였습니다.

끝으로,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287억 1,000만원을 증액하고, 214억 5,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등기특별회계는 34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은 103억 9,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경우,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이후에 증원이 결정된 재판연구원 인건비 77억 3,700만원을 증액하였고,

회생법원 이전·설치 등 예산안을 '전문재판운영'에서 '법원시설관리 등' 사업으로 이관하는 한편, 2026년에는 서울회생법원 이전 후 제3·제4별관만 공간을 재배치할 예정임에도 본관 공간 재배치를 위한 자산취득비까지 계상되어 있어 이를 3억 3,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등기특별회계는 올해 중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300억원을 예수 받을 예정이므로, 그에 따라 2026년도에 상환해야 하는 예수원리금을 34억 5,000만원 증액하였고,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은 일반국선변호인과 전담국선변호인 보수 등 인상을 위하여 103억 800만원,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8,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매 분기별 관서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의 집행 세부내역과 분개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으로 집행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등, 총 1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고,

국유재산관리기금과 관련, 대전회생법원 리모델링에 필요한 14억 6,600만원 증액 필요성 등, 총 2건을 기재위에 의견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노트북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Ⅶ. 심사결과

수정의결

※ [붙임] 참조

Ⅷ. 소수의견 요지

해당사항 없음.

Ⅸ. 찬반토론 요지

※ 회의록 참조

Ⅹ. 부대의견

※ [붙임] 참조

붙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결과

Ⅰ.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총괄표

1. 세입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위원회명	소 관	회 계 명	수정의결		
			증 액	감 액	증 감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일반회계	-	△20,000	△20,000
		교도작업특별회계	-	-	-
	감사원	일반회계	48	-	48
	헌법재판소	일반회계	-	-	-
	대법원	일반회계	-	-	-
		등기특별회계	-	-	-
	합 계		48	△20,000	△19,952

2. 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위원회명	소 관	회 계	수정의결		
			증 액	감 액	증 감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일반회계	238,082	△2,125.6	235,956.4
		교도작업특별회계	-	-	-
	법제처	일반회계	821	△9.54	811.46
	감사원	일반회계	692	△241	45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반회계	-	-	-
	헌법재판소	일반회계	6	-	6
	대법원	일반회계	7,837	△583	7,254
		등기특별회계	3,450	-	3,450
	합 계		250,888	△2,959.14	247,928.86

3.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결과

(1) 수입 : 원안의결

(2) 지출

(단위 : 백만원)

위원회명	소 관	기 금	수정의결		
			증 액	감 액	증 감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5,561	-	5,561
	대법원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0,391	-	10,391
	합 계		15,952	-	15,952

Ⅱ.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가. 법무부

1. 세입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목명 (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1	면허료 및 수수료 (65-651)	32,427	32,427	47,919	27,919	△20,000	○ 내역사업인 '전자여행허가제(K-ETA) 수수료 수납 사업'(30,400백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9,586백만원 증액)은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 및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수수료(세외수입)를 수납하려는 것임 ○ 법무부는 K-ETA 면제 종료를 전제로 세입예산안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정부가 면제 기간을 2026년 말까지 추가 연장함에 따른 수입 감소분을 반영하여 200억원 감액 필요	

(2) 교도작업특별회계 : 원안의결

2.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1	국가배상금 지급 (1031-301)	131,765	131,765	144,835	325,890	181,055	○ 내역사업인 '배상금'과 관련하여 과거사 사건 배상금 증가,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 사건의 상소 취하 및 포기로 배상금 지급 소요가 급증한 상황으로, 확정판결 배상금 1810억 5,500만원 증액 필요	
2	법률구조 (1131-300)	67,337	67,337	65,470	68,161	885	○ 내역사업인 법률구조서비스 통합시스템은 상담 전담조직인 '통합시스템 컨택센터' 구축과 관련하여 전담 사무공간 및 인력 확충, 참여기관 기술지원 및 정보접근 취약계층 상담체계 마련이 필요한 점, 시행 초기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전국 단위 대국민 홍보 추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8억8,500만원 증액 필요	
						645	○ 동 사업은 이천시 인구가 증가 추세임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사건은 이천시법원 전체의 8%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사법수요 부응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천지소 신설 관련 예산 6억 4,500만원 증액 필요	
						645	○ 동 사업은 양산시 법원 사건 수가 증가 추세임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사건은 양산시법원 전체의 9%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사법수요 부응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양산지소 신설 관련 예산 6억 4,500만원 증액 필요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516	○ 내역사업인 ‘기타법률구조기구’는, 전세사기 피해자 및 한부모 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의 법률구조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성과 관련 수요의 증가, 대법원의 예산지원 감소 등을 고려하여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의 자체수입 대비 17% 보전 명목으로 5억 1,600만원 증액 필요	
3	이민정책 개발지원 (1231-300)	190	190	196	255	59	○ 내역사업인 ‘중앙부처-지자체 이민정책 담당자 역량 강화 사업’은 중앙부처-지자체 이민정책 담당자 전문역량 강화 교육 부족 예산 5,900만원 증액 필요 ※ 산출식 : (물량) 8개(기존 5 +3개) 권역 × (단가) 12.1백만원* = 97백만원 (예산안 38백만원 대비 +59백만원)	
4	출입국외국인 관서시설운영 (1232-300)	55,163	55,163	63,354	65,764	2,336	○ 내역사업인 ‘출입국 소속관서운영경비 사업’은 부산출입국 청사에 본관·별관으로 분리되어 있는 업무시설을 동일 건물 내에 조성하고, 민원실과 보호실을 분리하여 민원인과 보호외국인 입소 동선을 분리하기 위한 부산출입국 청사 이전 임차료·공사비 23억 3,600만원 증액 필요 ※ 산출식 : 2,336백만원 - (440-00 무형자산) 청사 임차보증금 222백만원(1,358㎡ × 163,671원) - (210-07 임차료) 청사 연임차료 132백만원[285백만원(1,358㎡ × 17,516원 × 12월) - 153백만원(‘26년 부산청 별관 연임차료 편성액)] - (210-09 시설장비유지비) 청사 연관리비 175백만원[244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1,358㎡ × 15,000원 × 12월) - 69백만원('26년 부산청 별관 연관리비 편성액)] - (420-03 공사비) 청사 이전 인테리어 공사비 및 기존 임차 청사 원상복구비 840백만원 - (420-03 공사비) 본관 재배치 인테리어 공사비 967백만원	
						74	❍ 내역사업인 '출입국외국인관서 공무직근로자운영 사업'은 계호 및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경비원 60명의 특수직무수당 지급에 필요한 7,400만원 증액 필요 ※ 산출식 : 73,165천원 - 상용임금(110-03): 60명(경비원수 기준) × 85천원 ×12월 = 61,2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61,200천원 × 19.55% = 11,965천원	
5	외국인보호관리 (1233-300)	21,372	21,372	23,961	24,152	52	❍ 내역사업인 '불법체류외국인 수용관리 사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집행액 1억 3,100만원을 고려하여 보호외국인 의약품 구입 사업비 예산 5,200만원 증액 필요	
						139	❍ 내역사업인 '공무직근로자 운영사업'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을 보조하여 위험업무에 상시 노출되며 24시간 계호를 지원하고 있는 공무직 '외국인보호경비대원' 214명에 대한 '위험수당' 지원 예산 1억 3,900만원 증액 필요 산 출 식 - 상용임금(110-03) : 214명 × 45천원 × 12월 = 116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116백 × 19.8% = 23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6	외국인 사회통합지원 (1233-301)	17,639	17,639	19,509	22,356	827	○ 내역사업인 ‘외국인사회통합업무지원 사업’은 해외 MOU체결 지원, 현지조사 및 홍보 등 계절근로 운영 지자체를 종합지원하기 위한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위탁 예산 8억 2,700만원 신규 증액 필요 ※ 산출식 : (물량) 1개 기관 × [(단가) 인건비 315백① + 운영비 512백②] = 827백만원(순증) ① 4개 송출국(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언어·현지사정 등 전문가 등 6명 × 연 52.5백만원(농림부 공공기관 보수수준 감안, 고용부담금 포함) ② 계절근로 운영 지자체 종합 지원(계절근로 MOU 체결 관련 지자체 지원, 현지 점검, 계절근로 인권 모니터링, 서포터즈 운영, 해외현지 홍보 및 운영비 등)	
						2,020	○ 내역사업인 ‘외국인사회통합업무지원 사업’은 23개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사회통합교육지원 및 정체성 교육 지원등에 필요한 20억 2,000만원 증액 필요 ※ 산출식 : (물량) 23개 센터 × [(단가) 사회통합교육지원 및 정체성 교육 55백① + 상담사업비 33백②] = 2,020백만원(순증) ① 한국 근현대사 및 경제·사회·정치 발전사 교육, 동포의 권리·의무, 기초법·생활질서 교육 및 출입국 관서와 연계한 한국 문화·역사 체험, 지역주민·동포 어울림 활동을 통한 동포 인식 개선 및 상생 지원 등 ② 체류·영주·국적 상담 및 정보 제공, 복지 사각지대 동포 파악, 동포 지원프로그램 개발 등 동포 정주화 지원 사업 수행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7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제 운영 (1233-304)	13,909	13,909	13,955	16,010	2,055	○ 내역사업인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 사업'은 우수 강사 확보에 필요한 강사비 단가를 현행 26,000원에서 31,0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비 인상분 20억 5,500만원 증액 필요 ※ 산출식 : - (물량) 41.1만 시간['26년 총 교육시간)] - (단가) 강사비 시간당 5천원 증액(기존 26,000원 대비 +5,000원, 19.2% 증액 → 증액분 : 41.1만 시간 × 5천원 = 2,055백만원	
8	출입국정보 시스템운영 (정보화) (1232-305)	30,410	30ㅍ,410	41,015	41,615	600	○ 내역사업인 '시스템 개발 및 장비 도입 사업'은 외국인 명의를 도용한 불법 대포폰 개통 및 전화사기(보이스피싱)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신사 대상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용 시스템 확대 증설에 필요한 예산 6억원 증액 필요 ※ 산출식 : (물량)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 2식(HW, SW) × (단가) 300백만원 = 600백만원 (순증)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9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1333-306)	19,187	23,967	29,538	31,381.489	△144.684 △383.092 2,371.265	❍ 검찰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해 특수활동비(230-00) 1억 4,468만 4,000원, 특정업무경비(250-03) 3억 8,309만 2,000원을 각각 감액하는 대신, 사업추진비(240-01) 23억 7,126만 5,000원을 증액 ※ 특수활동비 중 총 20억원을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고, 특정업무경비 중 총 50억원을 사업추진비로 전환 (검찰활동 프로그램 내 세부사업 및 비목 간 증감연계)	※증감액연계 (세부사업 및 비목 간)
10	검찰업무 정보화 (정보화) (1334-500)	33,339	33,339	29,307	30,189	882	❍ 검찰 업무에 특화된 생성형 AI를 구축하여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자료 연계를 통한 검찰 사건처리 업무 효율성·신속성·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 AI 모델 개발' 사업 ISP 예산 8억 8,200만원 증액	
11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정보화) (1334-501)	9,861	10,004	12,427	12,285.976	△66.121 △79.403 4.5	❍ 검찰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해 특수활동비(230-00) 6,612만 1,000원, 특정업무경비(250-03) 7,940만 3,000원을 각각 감액하는 대신, 사업추진비(240-01) 450만원을 증액 ※ 특수활동비 중 총 20억원을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고, 특정업무경비 중 총 50억원을 사업추진비로 전환 (검찰활동 프로그램 내 세부사업 및 비목 간 증감연계)	※증감액연계 (세부사업 및 비목 간)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12	형사부 등 수사지원 (1335-301)	47,838	85,664	88,940	87,493.906	△745.224	❍ 검찰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해 특수활동비(230-00) 7억 4,522만 4,000원, 특정업무경비(250-03) 13억원을 각각 감액하는 대신, 사업추진비(240-01) 23억 8,673만원을 증액	※증감액연계 (세부사업 및 비목 간)
						△1,300		
						2,386.730	※ 특수활동비 중 총 20억원을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고, 특정업무경비 중 총 50억원을 사업추진비로 전환 (검찰활동 프로그램 내 세부사업 및 비목 간 증감연계)	
						△1,754.6	❍ 특수활동비는 검찰 직접수사 가능 범죄 축소 및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 등 고려하여 17억 5,000만원 추가 감액	
						△33	❍ 내역사업 '수사활동 일반'에 편성된 '영장심의위원회 수당' 예산안은 최초 편성 이후 현재까지 매년 개최실적이 계획 건수를 하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제 소요에 맞게 3,300만원 감액	
13	공공수사 (1335-302)	1,346	3,246	3,238	2,982.351	△255.649	❍ 검찰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해 특수활동비(230-00) 2억 5,564만 9,000원, 특정업무경비(250-03) 9,212만 2,000원을 각각 감액하는 대신, 사업추진비(240-01) 9,212만 2,000원을 증액	※증감액연계 (세부사업 및 비목 간)
						△92.122		
						92.122	※ 특수활동비 중 총 20억원을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고, 특정업무경비 중 총 50억원을 사업추진비로 전환 (검찰활동 프로그램 내 세부사업 및 비목 간 증감연계)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14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1335-303)	9,918	14,456	15,726	13,764.038	△661.962	❍ 검찰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해 특수활동비(230-00) 6억 6,196만 2,000원, 특정업무경비(250-03) 10억 5,971만 6,000원을 각각 감액하는 대신, 사업추진비(240-01) 5,971만 6,000원을 증액 ※ 특수활동비 중 총 20억원을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고, 특정업무경비 중 총 50억원을 사업추진비로 전환 (검찰활동 프로그램 내 세부사업 및 비목 간 증감연계)	※증감액연계 (세부사업 및 비목 간)
						△1,059.716		
						59.716		
						△300	❍ 특수활동비는 검찰 직접수사 가능 범죄 축소 및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 등 고려하여 3억원 추가 감액	
15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1335-306)	4,858	6,124	6,158	5,998.14	△126.360	❍ 검찰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해 특수활동비(230-00) 1억 2,636만원, 특정업무경비(250-03) 8,566만 7,000원을 각각 감액하는 대신, 사업추진비(240-01) 8,566만 7,000원을 증액 ※ 특수활동비 중 총 20억원을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고, 특정업무경비 중 총 50억원을 사업추진비로 전환 (검찰활동 프로그램 내 세부사업 및 비목 간 증감연계)	※증감액연계 (세부사업 및 비목 간)
						△85.667		
						85.667		
						△33.5	❍ ‘금융거래정보 통보비용’은 실제 통보건수에 비하여 과다한 통보건수를 예정하고 있고, 모바일 통보건수 비율과 모바일 통보단가 등을 고려하지 않아 과다산정된 측면이 있으므로 3,350만원 감액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16	공판활동지원 (1337-300)	1,265	2,037	1,928	2,157	229	○ ‘공익대표 활동 지원 강화’ 사업은 법률 구제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제도의 사회적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2억 2,900만원(업무추진비 9,300만원, 일반수용비 1억 3,600만원) 증액	
17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1337-301)	6,648	7,262	6,476	6,497	21	○ 자유형 미집행자의 검거 후 집행률은 평균 57.7%였으나, 2025년 상반기에는 44.7%로 하락하였음에도, 동 사업의 특정업무경비는 8,000만원에서 7,203만 9,000원으로 오히려 800만원 감액되었는바, 하락한 자유형 집행률(57.7%/44.7%) 등을 고려하여 특정업무경비 약 2,100만원 증액	
18	형사보상 (1337-302)	42,000	42,000	44,000	77,000	33,000	○ 매년 형사보상금 지급분이 부족하여 이·전용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억원만 증액 편성되었는바, 2024년 집행액 수준을 고려하여 330억원 증액	
19	검찰청 운영 기본경비 (7018-252)	16,079	16,079	16,164	16,159.5	△4.5	○ ‘금융거래정보 통보비용’은 실제 통보건수에 비하여 과다한 통보건수를 예정하고 있고, 모바일 통보건수 비율과 모바일 통보단가 등을 고려하지 않아 과다산정된 측면이 있으므로 450만원 감액	
20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1032-301)	734	734	742	842	100	○ AI 국제규범 질서 주도를 위해 국제회의 참석 범위 확대, AI 협약 가입 검토·절차 진행, 국내 이행법률 제·개정 추진 등을 위한 법률 전문가 증원 및 1억원 증액 필요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21	교도소 행정지원 (1531-300)	51,516	51,516	52,223	52,404	181	○ 동 사업은 일반수용비(210-01)로 교정공무원의 특수건강검진비를 현행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1억 8,100만원 증액 필요	
22	대체복무 시설개선 및 운영 (1531-304)	17,241	17,241	14,926	15,465	205	○ 내역사업 '대체복무 운영경비'는 2026년 대체복무 1개 기관 증설, 대체복무요원 72명, 대체복무 예비군 400명이 증가될 예정임을 고려하여 운영경비 2억 500만원 증액 필요	
						334	○ 내역사업 '대체복무 물품구입'은 원활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3억 3,400만원 증액 필요	
23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1532-300)	290,348	290,348	302,342	311,372	9,030	○ 1일 평균 수용인원의 급격한 증가를 감안하여 예산편성 기준인원보다 부족한 수용자 2,000명분의 급식비, 의료비, 피복비 등 수용경비 90억 3,000만원 증액 필요	
24	교정교화 (1532-301)	11,457	11,457	12,900	13,260	360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국가지원이 필요한 수용자 자녀 전원에 대한 지원으로 대상자를 확대함(800건→2,000건)에 따라 3억 6,000만원 증액 필요	
25	교정시설 장비운용 및 현대화 (1531-302)	85,596	85,596	91,017	91,557	540	○ 교정시설 내 방음시설 및 영상재판 설비를 갖춘 전용 영상재판실 리모델링 공사비 5억 4,000만원 증액 필요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26	소년원생수용 (1632-300)	26,971	26,971	28,516	29,680	93	❍ 보호직 공무원을 보조하여 소년원생 등의 감호업무를 지원하는 등 위험업무에 상시 노출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감호실무관 144명의 위험수당 확대(월 4만원→월 8만5천원)에 따른 증액 필요	
						377	❍ 여자 위탁소년 전담시설에서 24시간 주·야 교대로 수용소년을 전담 관리·감독하는 감호실무관 등 공무직 근로자 7명 충원을 위한 3억 7,700만원 증액 필요	
						694	❍ 최근 소년원생 수용인원 급증에 따른 구호 및 교정비(320-06) 편성 인원 160명 확대(1,350명 → 1,510명)에 따른 6억 9,400만원 증액 필요	
27	치료감호자 수용관리 (1634-300)	12,581	12,581	14,770	14,776	6	❍ 국립법무병원에서 보호직 공무원을 보조하여 감호업무 지원 등 위험업무를 수행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감호실무관 10명에 대한 위험수당 확대(월 4만원→월 8만5천원)를 위한 600만원 증액 필요	
28	전자감독 (1635-301)	36,847	36,847	37,266	37,374	108	❍ 전자감독 대상자 지도·감독, 전자장치 관리, 재범 및 장치 훼손 시 현장출동 감독 등 보조업무 수행과정에서 전자감독 대상자의 난동 제압 등 위험업무를 수행하는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무도실무관 167명에 대한 위험수당 확대(월 4만원→월 8만5천원)에 따른 증액 필요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29	법무·검찰 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 (5131-301)	1,577	1,577	1,579	1,593	14	○ 내역사업 '교육운영지원 사업'은 표절검사 프로그램이 실효성을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 연속 예산 미편성으로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표절검사 프로그램 예산 1,430만원 증액 필요	

(2) 교도작업특별회계 : 원안의결

3.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1) 수입 : 원안의결

(2) 지출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1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1135-300)	22,539	21,442	27,823	28,353	530	❍ 내역사업인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은, 원스톱솔루션센터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필수요소로서 유관기관과의 시스템 연계를 위한 조기구축 및 비인가 접근방지, 자료암호화 등 기술적 보안대책 강구를 위한 개발비 및 SW/HW 도입비 5억 3,000만원 증액 필요	
2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1136-300)	1,696	1,632	1,653	1,821	168	❍ 내역사업인 '진술조력인 배치'의 경우 피해자진술권 보장을 위한 진술조력 전담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전담인력 급여를 현실화하고, 전담인력 미배치 지역(인천, 대전 등)에 전담인력(2명)을 신규 배치하는 등 서비스의 질적·양적 측면 모두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여 1억 6,800만원 증액 필요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1136-303)	39,887	39,413	40,394	44,664	4,270	❍ 동 사업은 피해자 직접지원 강화를 위한 치료회복프로그램·의료비 지원 확대 및 보건복지부 보장시설과 동등한 수준의 보호시설 입소 성폭력 피해자의 생계비 지원 현실화 등을 위한 증액(10억 9,700만원), 해바라기센터의 인프라 확충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증액 예산(31억 7,300만원)을 합계한 총 42억 7,000만원 증액 필요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4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1136-305)	13,505	13,495	12,145	12,738	593	○ 내역사업인 국선변호사 수당 및 국선전담변호사 운영은, 국회 계류 중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통과 시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이 확대될 것임에도 지원 확대를 대비한 예산이 미반영되었으므로, 대비 차원의 예산 5억 9,300만원 증액 필요	

나. 법제처

1. 세입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 해당없음

2.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1	기관운영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1011-200)	1,780		1,794	1,784	△9.54	○ 파견검사 1인에 대한 직책수행경비는 월 79만 5,000원으로 총 954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2025년 8월 하반기 검사 인사시 법무부가 외부기관 파견 보직을 감축함에 따라 현재 법제처에는 파견검사가 근무하지 않고 있으며, 법제처는 2025년 10월 현재 다시 검사 파견을 요청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954만원 전액 감액	
2	법제업무정보화 추진(정보화) (1033-305)	8,046		20,517	821	21,338	○ 내역사업인 '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서비스'(73억 500만원, 전년 대비 26억 7,300만원 증액) 중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도화 예산 2억 5,1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됨.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정보와 이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화면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아 반응형 웹 미지원, 모바일 기능 제한 등으로 국민 불편이 커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졌는데, 위 고도화 예산으로는 디자인 신규 설계까지만 가능하고 실제 시스템 적용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여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등을 합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 레이어 고도화를 위해 8억 2,100만원 증액	

다. 감사원

1. 세입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연번	목명 (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1	기타잡수입 (재화 및 용역판매 수입) (13-69-691)	107	107	116	164	48	○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외부감사 예상 수수료 (4,800만원)를 세입예산안에 반영	

2.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1	기본경비 (1111-251)	13,464	13,464	13,768	14,009	241	○ 어린이집 운영 예산을 동 세부사업으로 이관하고,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로 비목 변경	※증감액연계 (세부사업간)
2	노후시설 개보수	2,012	2,012	1,199	958	△241	○ 어린이집 운영 예산을 기본경비(1111-251) 세부사업으로 이관	※증감액연계 (세부사업간)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및 업무시설 정비 (1133-309)							
3	감사활동경비 (1131-303)	9,234	14,512	15,065	15,467	228	○ 현장 중심 감사 업무를 위해 업무용택시비를 신규 편성(2억 2,800만원)	
						174	○ 감사활동 수행을 위한 관서업무비 증액(1억 7,400만원)	
4	국제교류협력강화 (1135-322)	1,025	1,025	920	969	49	○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외부감사 소요 비용(4,900만원)을 세출예산안에 반영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 세입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 해당없음

2.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 원안의결

마. 헌법재판소

1. 세입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 원안의결

2.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1	국선대리인보수등 (1031-300)	127		121	127	6	○ 참고인 연구비 등 사업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불용이 발생한 것을 반영하여 2026년도 예산안에 감액 편성되었으나, 헌법재판에 있어 참고인 활용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므로 전년도 수준의 예산 확보를 위해 600만원 증액	

바. 대법원

1. 세입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 원안의결

(2) 등기특별회계 : 원안의결

2.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1	일반 인건비 (7001-151)	1,370,174	1,370,174	1,480,113	1,487,850	7,737	○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이후 증원 결정(9월)된 재판연구원 94명에 대한 인건비가 미편성되었으므로 77억 3,700만원 증액	
2	사법업무전산화 (1331-300)	72,740	72,740	82,846	82,946	100	○ 내역사업인 '사법업무시스템 구축'(248억 7,5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90억 3,300만원 증액)은 AI 기반 재판양형 플랫폼 등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AI를 활용해 가짜판례, 허위인용 등이 포함되어 작성된 변론서 내용을 검증하는 AI 변론서 스크리닝 시스템 도입 ISP를 위한 용역비 1억원 증액	
3	가족등록업무 전산화 (1332-303)	17,456	17,456	17,321	17,061	△260	○ 내역사업인 '기타운영비'(34억 7,8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3,900만원 감액)는 가족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전산장비 임차료 등으로, 2026년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전산장비 임차료 예산액(24억 9,317만원)이 실제 집행 예정인 금액(22억 3,046만원) 보다 과다 편성되어 있으므로 2억 6,000만원 감액	
4	전문재판운영 (1144-407)	2,296	2,296	25,196	4,000	△21,196	○ 내역사업인 '회생법원 운영 및 역량강화'(223억 9,7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211억 9,600만원 증액)는 회생법원 이전 및 설치, (구)서울회생법원 공간재배치, 통합도산지원센터 설치 및 회생 및 파산재판 기본운영을 위한 사업인데, 회생법원 이전 및 설치, (구)서울회생법원 공간재배치, 통합도산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 211억 9,600만원을 '법원시설관리 등(1253-411)' 세부사업으로 이관하기 위해 감액 ○ 다만, '회생법원 운영 및 역량강화' 내역사업의 내 내역사업인 '(구)서울회생법원 공간재배치'(32억 3,900만원, 순증)는 캠코양재타워에 이전될 서울회생법원이 사용했던 제3, 4별관 공간을 재배치하는 사업인데, 2026년도 동 사업을 통하여 제3, 4별관만 공간 재배치할 예정임에도 본관 공간 재배치를 위한 자산취득비가 계상되어 있으므로, '법원시설관리 등(1253-411)' 세부사업으로 이관하면서 자산취득비 3억 2,300만원 감액	※증감액연계 (세부사업간)
5	법원시설관리 등 (1253-411)	64,162	64,162	70,837	91,710	20,873	○ '전문재판운영' 사업의 회생법원 이전 및 설치, (구)서울회생법원 공간재배치, 통합도산지원센터 설치	※증감액연계 (세부사업간)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를 위한 예산(211억 9,600만원)을 이관하기 위해 증액하되, ‘(구)서울회생법원 공간재배치’ 내내역사업의 자산취득비 감액분 3억 2,300만원을 고려하여 208억 7,300만원 증액	

(2) 등기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1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신규편성)	-	-	-	3,000	3,000	❍ 최근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해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이 감소함에 따라 인건비, 정보시스템 운영 등 필수항목 지출에 어려움이 있어, 2025년도 필수항목 지출 등을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300억원을 예수 받을 예정임. * 2025년 11월 中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 의결 예정 ❍ 대법원은 2026년부터 예수 원금 300억원을 10년 분할 상환할 계획이므로, 2026년도 등기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사업을 신설하여, 예수금 원금 30억원 증액	
2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신규편성)	-	-	-	450	450	❍ 대법원은 2026년부터 예수 원금 300억원을 10년 분할 상환할 계획이므로, 2026년도 등기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사업을 신설하여, 예수원금에 대한 이자 4억 5,000만원 증액 * 450백만원 = 예수원금 30,000백만원 × 0.015(연이율 3%*기간분산 50%))	

3. 사법서비스진흥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1) 수입 : 원안의결

(2) 지출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1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1161-303)	3,879	3,879	3,713	3,796	83	○ 내역사업인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사업지원'(8,300만원, 전년 대비 8,300만원 감액)은 전세사기 피해자, 한부모 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의 법률구조 수요 증대 및 법률구조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을 고려하여 8,300만원 증액	
2	국선변호료 지원 (1161-307)	24,598	24,598	94,617	104,925	5,047	○ 내역사업인 '일반국선변호료 지원'(685억 7,000만원, 순증)은 일반국선변호인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도록 일반국선변호인 기본보수를 5만원 인상(55만원→60만원)하기 위하여 50억 4,700만원 증액	
						5,261	○ 내역사업인 '전담국선변호료 지원'(260억 4,700만원, 전년 대비 14억 4,900만원 증액)은 사회적 약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도록 2008년 이후 동결된 국선전담변호인 보수 등을 현실하기 위하여 보수 100만원 및 사무실 운영비 60만원 인상을 위한 52억 6,100만원 증액	

Ⅲ. 부대의견

가. 법무부

○ 법무부는 인권친화 환경조성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유형별 단가체계, 시급성·우선순위 기준, 연차별 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한다.

○ 법무부는 확정판결 사건의 신속한 배상 집행 및 지자체 분담 협의 방안을 구체화한다.

○ 법무부는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업무협의', '변호사징계위원회 업무협의'에서 변호사 징계수위 적절성에 대해 논의한 사안은 무엇인지 제출하고, 대한변협의 징계 수위를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법무부는 피해자 지원 관련 주요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의 참여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연계 대상기관의 데이터 표준화 및 기술적 연동 방안을 마련한다.

○ 법무부는 범죄피해구조금 산정방식 단순화 및 차등배율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 일정 및 이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구체화하고, 피해유형별 지급 기준과 수요 추계 근거를 명확히 하며,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의 공정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산 기반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법무부는 이민정책연구원운영 예산안 편성 시 다년도에 걸친 예산을 한꺼번에 계상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단년도 편성 및 집행을 원칙으로 편성한다.

○ 법무부는 현재 이민정책연구원 통계DB가 대외 공개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민간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근거 마련, 대국민 통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

○ 법무부는 증가하는 외국인노동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광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목포 출장소”를 “목포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격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사회구성원으로서 외국인을 포용할 다양한 제도를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 법무부는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사업 추진 시 참여자 추이와 이민자 인권 교육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차년도 참여인원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추가 예정인 참여 인원은 예비추천인력이 아닌 실제 입국 인원으로서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기준으로 예측하도록 한다.

○ 법무부는 한국이민재단 위탁사업의 선정·평가·회계공시 기준 명확화, 재정·운영정보 공개 확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의 업무 중복 및 이해충돌 방지체계 마련 등 투명성 제고방안을 강구한다.

○ 법무부는 서울청 신청사 이전에 따른 출입국정보화전산센터 신설 시 출입국·이민행정 정보시스템의 원

활한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해 화재 대비 시설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한다.

○ 법무부는 제도 시행 일정에 맞춰 공소청 출범에 필요한 기초 예산소요 검토 및 예비편성 방향을 마련하고, 공소청이 조직·기능 확정 후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예산 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한다.

○ 법무부는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 공개와 관련하여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기준과 맞지 않게 공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법무부는 검찰 특수활동비를 다음에 따라 집행한다.

① 특수활동비는 적체된 민생과 서민생활 침해 사범 수사 분야에 집중 집행한다.

②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여 집단행동 등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의 경우에는 특수활동비를 집행하지 아니한다.

③ 전 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활동비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검찰은 구체적 집행항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이 이를 검토한 후 집행한다.

○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진위확인서비스 사업을 정부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연계하여 운영하고, 사업 수행 시 체계적 성과관리 등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법무부는 민영교도소에 대한 보조율을 90%보다 낮추는 민영화 비율 증가 방안을 마련한다.

○ 법무부는 교정직 공무원에게 국립묘지 안장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및 교정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법무부는 마약류 치료 프로그램 확대 예산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심사과정 및 개정내용을 참고하여 검토한다.

○ 법무부는 인권존중 차원에서 교정시설의 석면 자재 제거 및 열악한 냉난방 등 시설개선, 교정직원 야간근무자 특수건강검진 지원, 정신건강회복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법무부는 전자감독 전담인력 1인당 관리인원이 10명 이하가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한다.

○ 법무부는 검사 국외훈련 논문과 관련하여 표절 판정 및 조치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표절 논문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나. 법제처

○ 법제처는 어린이·청소년법제관 대상 입법체험활동 만족도가 낮은 프로그램의 원인을 분석하고, 참여자 중심의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퀴즈 난이도 조정 및 진행방식 개선 등으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향후 입법체험활동별 만족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 기반 예산편성 체계를 강화한다.

○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에서 연구용역을 반복하기보다 확정된 정비안의 실제 개정 반영률 제고에 집중하고, 단순 문장 보정이 아닌 법령 체계·표현 전반 개선 및 국민 참여형 검토체계 도입 등 근본적으로 사업을 재설계한다.

○ 법제처는 법제업무담당자 단기해외연수의 목적과 프로그램 일정을 정책·법제 관련 기관 중심으로 재편성하고, 일정 변경 시 그 사유 및 대체기관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한편, 연수성과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사후평가보고서 평가체계를 강화해 예산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 법제처는 중국·일본 등 주요국 참여를 적극 유도해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의 대표성과 위상 강화를 도모하고, 상호 교류 의제를 구체화하는 등 전략적 협력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다. 감사원

○ 감사원은 에너지 저장장치(ESS)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효율 제고 등 실질적 에너지 절감 방안을 마련한다.

○ 감사원은 정부청사나 공공건물 활용을 통한 지방사무소 임차료 절감 방안을 검토한다.

○ 감사원은 특수활동비를 예산지침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할 방안을 마련하고,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증빙자료(영수증 및 일시·내역·금액이 명시된 지출서류)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다.

○ 감사원은 자문 건수와 분야를 고려한 감사권익보호관 인력풀 구축 및 감사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 보장 방안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 감사원은 「헌법」 및 「감사원법」에 규정된 회계검사 권한에 따라 정부의 재정관리에 대해 충실히 감사한다.

○ 감사원은 지방이양사업의 국고보조금 지원 문제 지적시, 해당 사업의 연혁, 재원확보 및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등을 고려한다.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디지털포렌식 현장지원 및 분석 건수를 제출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부고발자 보호·보상제도의 실질적 운용을 위해 인센티브 확대, 신변보호 실효성 강화, 신고자 익명성 보장, 법무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 보호 프로그램 등과 연계 및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수사활동 택시비 집행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공판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교육내용의 공판 관련성, 교육대상 검사의 규모, 예산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법무연수원에 위탁 교육을 추진한다.

마.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는 인건비 과다불용 문제를 개선하여 적정 집행률을 확보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헌법재판소는 상용임금 세목의 집행률을 개선하여 불용액 최소화와 예산의 안정적 집행 간 균형을 확보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헌법재판소는 장애인 공무원의 퇴직이 예상되는 경우 채용절차를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도록 노력하고 불필요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예산 편성을 지양하도록 한다.

○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 보수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국선대리인 선임률·인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헌법재판소는 구술총서의 실제 수요와 활용도를 고려하여 발간 부수를 조정하고, 단가를 재산정하여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한다.

○ 헌법재판소는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 사업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헌법재판소는 데이터센터 발전방향 ISP 사업 추진 전 컨설팅 과업 범위, 수행기간, 주요 산출물 등에 대한 구체적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타 기관 사례를 참고하여 예산의 적정성 및 집행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 헌법재판소는 차세대 법률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의 단계별 사업목표와 기술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하고, 예산의 집행 및 성과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며,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보화 전문인력 보강 계획을 마련한다.

바. 대법원

○ 대법원은 매 분기별 관서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회의명, 일시, 장소, 참석자, 영수증 등 증빙자료 등을 포함)과 분개내역 등을 공개한다.

○ 대법원은 매 분기별 특정업무경비 집행 세부내역과 분개내역 등을 공개한다.

○ 대법원은 시각장애인이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점자판결문 제공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개선을 검토한다.

○ 대법원은 '사법부 AI 기반 형사재판 및 양형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 사업'의 사고이월을 방지하고 연내 예산의 전액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 대법원은 '사법부 AI 기반 형사재판 및 양형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 사업'에 양형기준에 대한 적절한 조정을 가한 자료를 학습시킨다.

○ 대법원은 대국민 사법지원 AI서비스를 신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해 일반국민들의 소송 수행 지원을 위한 AI서비스 도입을 모색한다.

○ 대법원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판례 제공 사이트의 통합 방안을 검토하여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한다.

○ 대법원은 법정언행컨설팅 교육 전문 담당기관(사법연수원 등)을 선정하기 위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반기에도 컨설팅이 심도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하고, 장기적으로 임용 후 5년, 10년 단위로 개별 법관의 법정언행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실질적인 법정언행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대법원은 향후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보호위탁·치료위탁·상담위탁 비용지원 계획안의 적정 소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실제 지급건수 등 관련 자료를 관리하도록 한다.

○ 대법원은 체계적인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대상 법원 및 장소를 특정하는 등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계획을 구체화하여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한다.

○ 대법원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미지급 이월금 225억 6,600만원을 국선변호인에게 조속히 지급하여 일반 국선변호인 보수 연체를 해소하고 향후 이러한 보수 연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서면 제출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기본 보수액의 50%~80% 범위에서 보수를 감액 지급하도록 하는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추후 경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Ⅳ.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한 의견제시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1	상주 외국인 보호소 신축 (신규)	-	-	-	598	598	○ 영남 지역 외국인보호소의 부재 등으로 발생하는 강제 퇴거 집행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지방사무소의 퇴거 집행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북 상주시에 180명 수용 규모의 송환 전문 외국인보호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필요한 2026년도 1년차 사업비(기본설계비) 5억 9,800만원 신규 증액 필요	
2	광주 지방검찰청 해남지청 이전 신축 (신규)	-	-	-	1,000	1,000	○ 현재의 청사는 전국에서 가장 노후화된 건물로서 (1982년 신축, 43년 경과), 청사 안전성 및 사무공간 등 부족으로 사법복지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 일대에 법조단지 조성 필요 ○ 광주지검 해남지청 향후 추진일정 경과에 비추어 2026. 12. 공공청사용지 매입이 예정됨에 따라, 광주지검 해남지청 법조타운 조기 조성을 위하여 건설보상비 10억원 예산 반영 필요	
3	전주 솔로몬로파크 신축 (2431-438)	1	1	1	3,000	2,999	○ 전주 솔로몬로파크 건립사업의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신청 법정기한(‘26.12.) 도래에 따라 신축사업의 이행을 위한 30억원 증액 필요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4	안양소년원 재건축 (신규)	-	-	-	740	740	○ 안양소년원의 수용정원 확대(80명→120명)를 위한 재건축사업 실시 관련 기본조사설계비・시설부대비 7억 4,000만원 증액 필요	
5	청사시설 취득 (1331-300)	20,989	20,989	9,636	11,102	1,466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대전회생법원 청사로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가 활용될 예정인데 30년이 경과한 노후 청사로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비, 공사비 등 14억 6,600만원 증액 필요	
6	광주지법 해남지원 취득 (신규)	-	-	-	1,000	1,000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1982년 본관 신축 이후 40년 이상 경과한 본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법정 등 재판시설이 부족한 상황이고, 건물 노후화로 인한 관리비용 증가 등 유지·보수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이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사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토지매입비 10억원 증액 필요	